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71호 2019. 1. 28.(월)

조 례

-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25
-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5
-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38
- 목포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40
- 목포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42
-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45
- 목포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47
-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 49
-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57
- 목포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61
-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68

고 시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111

공 고

-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2

기 타

- 시정알림판 ----- 117

회람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2019. 1. 17.)에서 의결된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월 2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20호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예술진흥담당”을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소장작품추천위원회 구성 및 관리 등

제14조(소장작품추천위원회) ① 시장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되 소장작품추천위원회와 전시작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장작품추천위원회는 8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문화 예술업무를 관할하는 국장,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안전과 관련 있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미술단체 회원이나 미술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장르별 작가
3. 학계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작품에 대한 추천심의회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작품구입과 관련된 각 위원회는 위원 상호간 중복 위촉하지 아니한다.

⑥ 소장작품추천회의에서는 소장작품 추천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전시작품 심의위원회에서는 추천된 작품의 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소장작품 구입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4장 보칙”을 “제5장 보칙”으로 변경하고 “제14조”를 “제15조”로 개정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 (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u>예술진흥담당</u> 이 된다.	제12조 (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u>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u> 이 된다.
<u><신 설></u>	<u>제4장 소장작품추천위원회 구성 및 관리 등</u>
<u><신 설></u>	제14조(소장작품추천위원회)① 시장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되 소장작품추천위원회와 전시작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장작품추천위원회는 8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문화예술업무를 관할하는 국장,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안전과 관련 있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미술단체 회원이나 미술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장르별 작가 3. 학계전문가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작품에 대한 추천심의회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작품구입과 관련된 각 위원회는 위원 상호간 중복 위촉하지 아니한다. ⑥ 소장작품추천회의에서는 소장작품 추천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전시작품심의위원회에서는 추천된 작품의 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소장작품 구입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u>제4장 보칙</u> <u>제14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제5장 보칙</u> <u>제15조(-----)</u> ----- ----- -----.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2019. 1. 17.)에서 의결된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월 2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21호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회계관계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고, “공고요령과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회계관계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민원사무 전용공인이나 동판”을 “민원사무전용임을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이외의 공인”을 “공인”으로 하고,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써야”를 “알아보기 쉬운 곧고 바른 한글체를 사용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업무관리시스템의 공문작성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 인 의 구 분	규 격
1. 목포시장 직인	3.0cm정방형
2. 사업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공인	
가. 4,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1cm정방형
나. 6,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8cm정방형
3. 사업소장의 보조기관 공인	1.6cm정방형
4.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 지출관, 지출원 및 분임자	2.0cm정방형
나. 출납원 및 분임자	1.8cm정방형
5. <삭 제>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서(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관련)



목 포 시



수신

(경유)

제목 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

「목포시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의2(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공 인 명	
종 류	[] 공인 [] 인증기용 [] 전자이미지공인
구 분	[] 등록 [] 재등록 [] 폐기
등록(재등록) 및 폐기 예정일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및 폐기한 사람	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 고	

- 붙임 1. 공인대장 1부.(별도송부)
2. 전자이미지공인대장 1부.(별도송부) 끝.

실무관

협조자

시행

접수

우 58613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 203 (용당동, 목포시청)

/ <http://www.mokpo.go.kr>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목포시공인(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회계관계공무원----- ----- -----그 밖에----- ----- ---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시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동장·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 ----- -----회계관계공무원-----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특수공인) ① 시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전용공인이나 동판에 새긴 공인을 인증기에 부착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특수공인) ① ----- ----- ----- 민원사무전용임을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 · 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③ ----- -----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① 시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자와 규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자는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생략)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또는 동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관리시스템의 공문 작성 서식을 활용하여 전자문서로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생략)

-----, 전자이미지공인-----
-----.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① <삭 제>

② 공인-----
-----알아보기 쉬운
곧고 바른 한글체를 사용하
여야-----
-.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생략)

② -----

----별지 제1호서식-----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공 인 의 구 분	규 격
1. 사업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공인 가. 4,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나. 6,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1cm정방형 1.8cm정방형
2. 사업소장의 보조기관 공인	1.6cm정방형
3.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 지출관, 지출원 및 분임자 나. 출납원 및 분임자	2.0cm정방형 1.8cm정방형
4. <삭제 2018.5.8>	<삭제 2018.5.8>

[별표]

공 인 의 구 분	규 격
1. 목포시장 직인	3.0cm정방형
2. 사업소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공인 가. 4,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나. 6,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1cm정방형 1.8cm정방형
3. 사업소장의 보조기관 공인	1.6cm정방형
4.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 지출관, 지출원 및 분임자 나. 출납원 및 분임자	2.0cm정방형 1.8cm정방형
5. <삭제 2018.5.8>	<삭제 2018.5.8>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목 포 시

수신
(경유)

제목 공인 등록 및 폐기 신청

『목포시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의2(전자
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공 인 명	
종 류	[] 공인 [] 인증기용 [] 전자이미지공인
구 분	[] 등록 [] 재등록 [] 폐기
등록(재등록) 및 폐기 예정일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및 폐기한 사람	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 고	

붙임 1. 공인대장 1부(별도송부)

2. 전자이미지공인대장 1부(별도송부) 끝.

실무면

협조자

시행

접수

우 58613 전라남도 목포시 양율로 205 (율당동, 목포시청)

/ http://www.mokpo.go.kr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2019. 1. 17.)에서 의결된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월 2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22호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5. (생 략)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u> <u>에 관한 사항</u>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2019. 1. 17.)에서 의결된 목포시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월 2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23호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재난 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5조제2항 중 “영 제4조제2항”을 “피해상황, 재정여건, 영 제4조제2항”으로, “고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로,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를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7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6조)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원인제공자”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지원”으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피해자는”을 “피해주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재난피해자가”를 각각 “피해주민이”로, 같은 항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6항”을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본문 중 “제7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를 “제9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으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말한다)”를 “말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제7조제6항”을 “제9조제6항”으로, “물품을 받은 사람이”를 “물품이”로, “제6조에 위반됨”을 “제8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모 [] 형제 []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거주) [], 세입자 [], 공공임대 세입자 []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KT []SKT []LGU+ []기타
	유선전화	() -	통신사명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부상 정도: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군·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포시장이 생활안전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포시장이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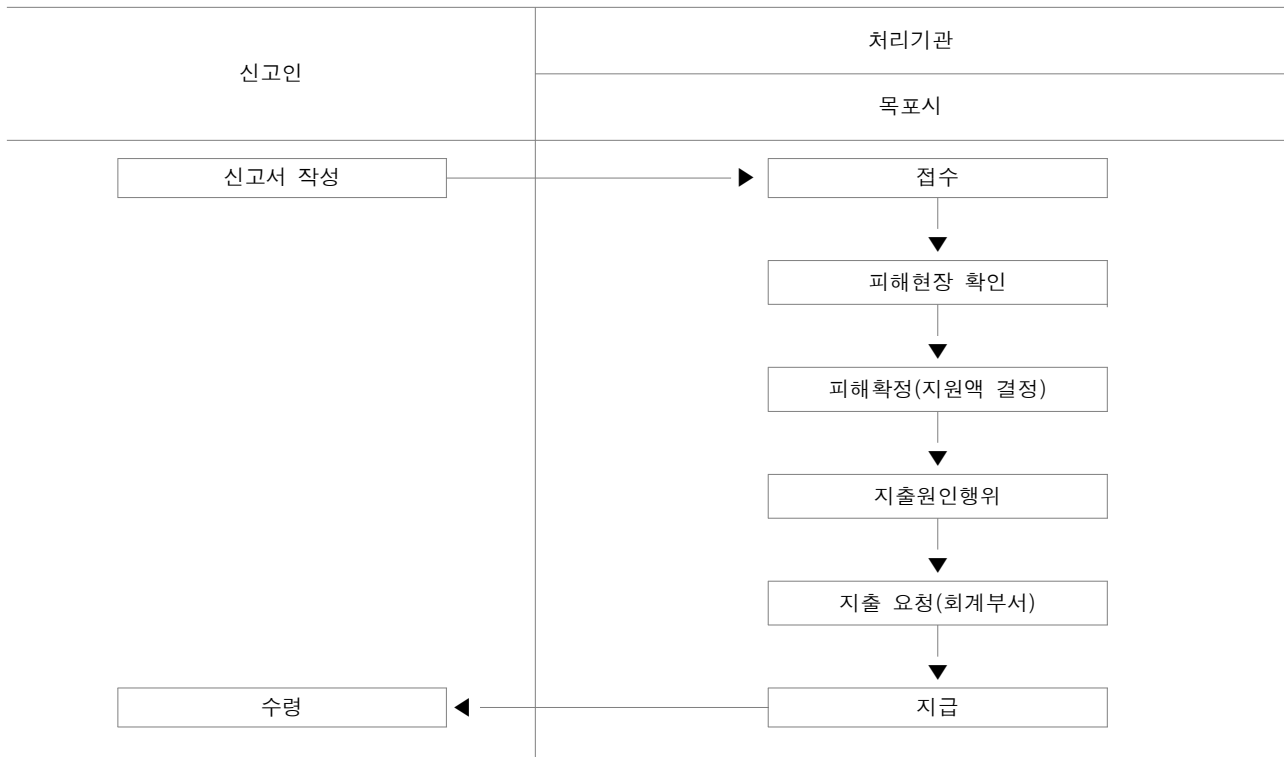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전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인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리 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법 제 16조제1항에 따른 목포시 재난 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u>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u> (이하 " <u>재난피해자</u> "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결정) ① ----- ----- ----- ----- ----- ----- ----- ----- ----- - <u>피해주민</u> ------ ----- ----- ----- -----.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 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u>재난피해자</u> 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 ----- ----- ----- ----- ----- <u>피해주민</u>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u>재난피해자</u> 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 <u>피</u> <u>해주민</u> ----- ----- -----

② (생 략)

제5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 설>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기준) ① -----

----- 피해주민-----

-----.

1. ~ 3. (현행과 같음)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신 설>

<신 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
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
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
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
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
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
(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
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
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
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7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
공자는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청
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
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
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
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
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

----- 원인제공자-

-----.

제9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지원-----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시장이 제4조제1
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
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
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
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
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
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 (생 략)

④ (생 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
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
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
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
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
공) 시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 피해주민-----
-----.

② -----
피해주민은 -----

-----.

③ ----- 피해주
민이 -----

-----.

1.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피해주민이 -----

----- 피해주
민의 -----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 제9조제6항-----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 8. (생략)

제9조(지급방법) 시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① 시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5조 및 제6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 제13조 (생략)

-----.

1. ~ 8. (현행과 같음)

제11조(지급방법) 시장이 제9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

-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

----- 말한다)의

-----.

----- 피해주민의 -----

-----.

제12조(환수) ----- 제9조제6항-----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
----- 제8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

-----.

제13조 ~ 제15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2019. 1. 17.)에서 의결된 목포시 재난 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월 2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24호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목포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수습·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목포시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화재, 붕괴,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

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등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라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편성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실·과·소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실·과·소가 없을 경우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목포시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운영한다.

③ 재난이 도서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으로 하여금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수습·복구체계 전환

제17조(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

구가 완료되고 수습·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2.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4.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5.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6.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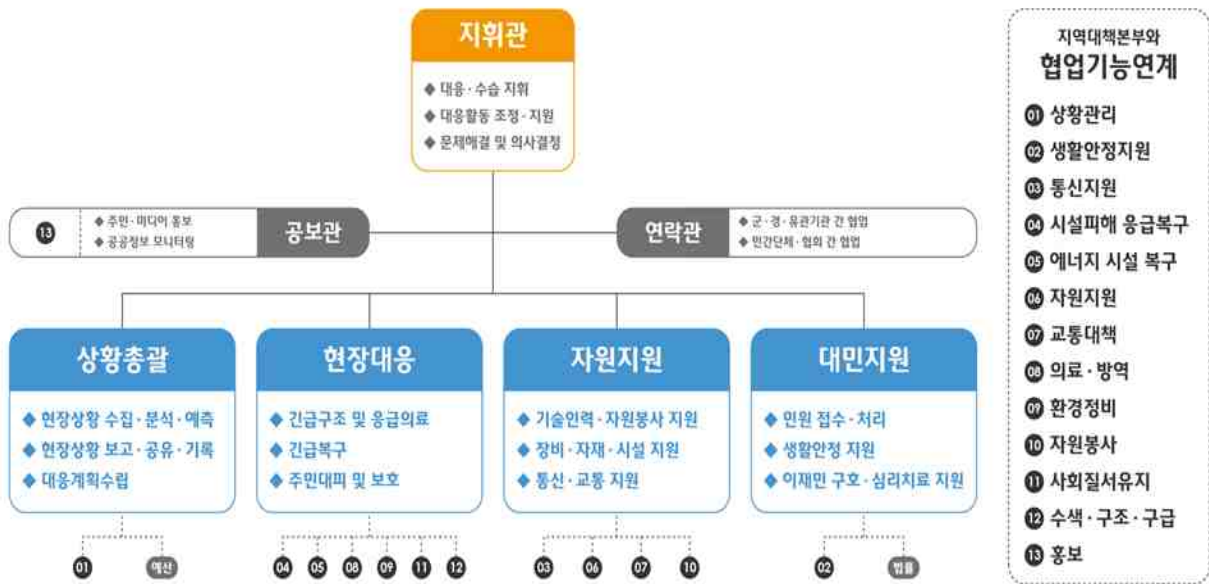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제7조 관련)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부시장)	•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공 보 관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연 락 관	• 군·경·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간 협업
상 황 총 괄 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현 장 대 응 반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자 원 지 원 반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대 민 지 원 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2019. 1. 17.)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월 2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25호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매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로 매월 20만원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1,941,260원으로 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이분의 일을 적용하여 매년 인상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별표 5〕를 준용한다.”

〔별표1〕, 〔별표2〕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 및 제8조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 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 정자료수집·연구비로 매월 90만원 과 보조활동비로 매월 20만원으로 한다.	제6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 게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 료수집·연구비로 매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로 매월 20만원으로 한다.
제7조 (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매월 1,875,610원 으로 하고, 2018년도는 매년(전년 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다.	제7조 (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19년부터 2020년 까지는 1,941,260원으로 하고, 2021년 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이분의 일을 적용하여 매년 인상한다.
제8조 (여비 지급기준) ①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 (여비 지급기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 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를 준용한다.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삭제 삭제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2019. 1. 17.)에서 의결된 목포시 부정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월 2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26호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 이내에 이를”을 “이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신고기한) 신고는 부정부패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를 준용한다.

제8조제1호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행위 시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을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인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지급대상) 부정부패 신고포상 금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동과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이하 “부정부패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u>1년 이내에 이</u> <u>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u>	제3조 (지급대상) ----- ----- ----- ----- ----- <u>이를</u> ----- --.
1. ~ 3. (생 략) <u><신 설></u>	1. ~ 3. (현행과 같음) <u>제3조의2(신고기한) 신고는 부정부패</u> <u>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u> <u>법」 제73조의2를 준용한다.</u>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사실 <u>이거나 행위</u> <u>시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신고한</u> <u>사항</u>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 ----- -----. 1. 신고내용이 허위사실 <u>인 경우</u>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2019. 1. 17.)에서 의결된 목포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월 2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27호

목포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목포시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산서의 제출 · 승인)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시장은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지출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조치) 시장은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2019. 1. 17.)에서 의결된 목포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월 2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28호

목포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다. "공공건축물"이란 시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시 홈페이지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물조사 대상물품
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②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명
2. 설치일시
3. 시공업체
4. 설치비용
5. 관리부서

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준공일시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 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2019. 1. 17.)에서 의결된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월 2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29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출장 공무원)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u>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u>	제8조(출장 공무원)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u>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u>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2019. 1. 17.)에서 의결된 목포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월 2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30호

목포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목포시에서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 싸인 지역을 말한다.
2. “섬의 날”이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2에서 정한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섬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념행사 지원 등) ① 시장은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섬의 날 기념행사
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
3. 섬 관련 국제 학술행사
4. 인근 시·군과 상호 협동으로 추진하는 섬 관련 각종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여객선운임 지원) ① 시장은 섬의 날에 목포시 관내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운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보조금 관리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상) 시장은 섬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2019. 1. 17.)에서 의결된 목포시 지역 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월 2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31호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가 발행하는 목포시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포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목포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개별 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목포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 나. 지역화폐를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제2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제22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화폐의 관리·운영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종이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전자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목포시 일원으로 한다.

④ 지역화폐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는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환전 수수료, 포인트 적립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할인 및 수수료) ① 시장은 화폐의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화폐 권면 금액의 100분의 5(설 추석 명절 전후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화폐의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개별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 소지자가 부담한다.

②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지역화폐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가맹점의 등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상인조직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3. 시(출자·출연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과 유흥업, 대부업, 사행성 영업장, 노점 등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의 대표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가맹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

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화폐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화폐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종이지역화폐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개별가맹점에게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목포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목포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목포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협의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목포시 소속 공무원
2.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종이지역화폐의 유통

제20조(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시장은 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조·변조 방지 전문 업체와 제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개별가맹점에 대한 환전) ① 시장은 월 1천만원을 한도로 개별가맹점에 게 종이지역화폐를 환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환전 한도를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제22조(종이지역화폐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종이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및 환전 업무 등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종이지역화폐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종이지역화폐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의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화폐를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④ 위탁의 절차 및 판매대행점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해서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전자지역화폐의 유통

제23조(전자지역화폐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 및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해서는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분석·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전자지역화폐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을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시장으로부터 전자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변경·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개인정보 보호) ①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5장 보 칙

제27조(담당공무원의 지정 등) 시장은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8조(수수료 등의 환수) 시장은 가맹점이 환전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수수료 또는 지역화폐 할인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2019. 1. 17.)에서 의결된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월 2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32호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한다.

제3조(점검단 구성·운영) ① 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 전문가로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품질점검위원(이하 “점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9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점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토목·구조·시공·소방·전기·설비·통신·조경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사람)
2. 공동주택 관련 유관기관·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공동주택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한 사람
- ④ 점검단장은 점검단 회의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등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
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5조(점검 범위) 점검단의 점검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한 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제6조(점검시기 및 방법) ① 시장은 제5조의 점검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점검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점검기간을 정하여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에 점검하게 할 수 있고, 점검반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을 완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점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점검단의 활동은 「주택법」 제44조,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점검결과 등) ① 점검단은 제4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점검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점검결과 보고서 등은 「주택법」, 「건축법」, 「건축사법」 및 관련법령에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한다.

③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사용검사신청 전에 조치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득한 조치결과

보고서를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점검위원의 임기는 전임 점검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척·회피) ① 점검위원은 품질점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점검위원은 품질점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점검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점검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점검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점검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제9조에 따른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됨에도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5. 제14조의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점검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등) ① 시장은 점검단의 운영 및 점검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단 및 점검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시공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점검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결한다.

③ 점검단 관련부서의 업무담당자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요구 등) ① 점검단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 및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점검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점검위원은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2019. 1. 17.)에서 의결된 목포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월 2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33호

목포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불법운행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신고자"란 제1호의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제1호의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2장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접수

제3조(신고의 접수 등) ①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이하“신고자”라 한다)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시장은 신고자에게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이송 및 통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 중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목포시가 아닌 경우에는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즉시 신고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류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제5조(지급대상 및 처리원칙)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하여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 처분(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한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한) ①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완요구) ①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신고자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에 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등의 제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처리결과 통보) ① 시장은 신고자가 처리 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 처리 소요기간과 처리 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를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포상금의 지급

제10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신고 1건당 10만원 이내로 지급하되, 당해 연도 세출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자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② 동일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시장은 신고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수사·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신고·고발한 경우
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고발한 경우
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
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고발한 경우
6.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
7.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고발한 경우

제13조(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은 행정처분 확정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절차) 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로부터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16조(비밀유지)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이메일(전자우편)	
	주 소			
피신고자	상 호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자동차등록번호	
	소 재 지			
신고 내용	자동차 정보	발견장소 및 일시		
		기타 (차종, 색상 등)		
	신 고 내 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기 타 증 병			
처리결과 수령방법		☐ 서면 ☐ 전자우편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 첨부 : 사진, 인적진술 등 기타 증빙자료 ※ 유의사항 : 포상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제9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추후 결과를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한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확인한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신고된 자동차 불법운행자가 동일 자동차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니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 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귀하께 포상금 신청절차를 별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에 따른 피 신고자의 조사여부, 처벌내역 등 구체적인 처리결과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 . . .

목 포 시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고일자 및 관서	신고일자		신고관서	
계좌신고	금융기관		통장용 인감	
	계좌번호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2019. 1. 17.)에서 의결된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월 2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34호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목포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및 "녹지"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공간·시설 또는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녹화계획”이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녹지활용계약”이란 시장이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3. “녹화계약”이란 시장이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 안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묘목의 제공 등 해당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7. “나무은행”이란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8. “요금”이란 입장료·이용료 및 사용료·점용료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공원시설 및 녹지를 관람·이용 또는 사용·점용한 대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원녹지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시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원녹지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도시녹화계획에 따른 녹지의 보전 및 확충
2. 시장이 도시지역 일정구역의 수립지 등을 일반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토지소유자와 체결하는 녹지활용계약
3. 시장이 일정구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 및 확충하고자 그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체결하는 녹화계약
4.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녹지조성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조경시설의 설치, 기념식수, 나무은행 등

제2장 도시녹화계획

제4조(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③ 중점녹화 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및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등을 말한다)
3. 경관지구, 미관지구 또는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한다.

⑥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6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도시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설정한다.
 - 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가. 토지이용 상황

나. 도시 녹화율

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장지 등을 말한다)의 녹화 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제2호에 따른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하거나,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다음 각 목과 같이 도출한다.

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지(裸地),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

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4. 제3호에 따른 녹화과제 도출을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에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포함 한다)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수립한다.

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 효과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

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행정기관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7조(수립 대상지별 녹화추진)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며,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① 공공공익시설 부지의 유형별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1과 같다.

②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2와 같다.

제9조(녹화프로그램) ① 시장은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운영한다.

②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해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10조(녹화보급 활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보급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따른 도시녹화를 위하여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행정기관 등의 적정한 역할분담 및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고 파트너십 녹화운동(이하 "녹화운동"이라 한다)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 시민참여에 따른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 등의 제작·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
5. 공원·녹지에 관한 문학행사(시·수필대회, 낭송회 등을 말한다), 강연회 개최
6.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7. 녹화박람회 개최
8. 녹화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시장이 녹화의식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녹지활용계약

제11조(대상토지의 면적 등) ① 녹지활용계약(이하 "활용계약"이라 한다)의 대상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는 주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으로서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감안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 토지 또는 단일토지가 아닌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도 대상토지로 할 수 있다.

③ 대상토지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④ 대상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별표3과 같다.

제12조(계약기간) 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최초로 계약할 때의 토지 상태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내용) 시장은 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1. 대상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해당 토지가 속한 활용계약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면을 첨부한다.
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산책로·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 및 정비에 관

한 사항

4.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을 말한다)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
 - 나.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
 - 다.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체결된 토지나 계약의 해지 이후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고가의 묘목이나 교목의 식재는 피하고 경미한 초화류나 관목 등으로 식재
5.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 가. 해당 토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나무의 가지치기, 풀베기, 고사된 나무 또는 부러지거나 쓰러진 나무의 벌채, 청소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나.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 다. 하자관리의 책임 등 관리책임의 범위에 관한 사항
 - 라. 계약이 해지된 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존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
 - 마.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의 관리주체 등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시장이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7. 활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활용계약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활용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계약체결) ① 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직접 대상토지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는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의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여부 등을 검

토하여 활용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대상토지로 선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선정한 때에는 시장은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그 이용 등에 관한 협의를 한다.

⑤ 제4항의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토지소유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녹지활용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15조(시설의 설치·정비) 시장은 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정비한다.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숲아베기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한다.
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및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정비한다.
3. 안내판은 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한다.
4. 화장실은 가능한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어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친화성·위생성 등을 고려하여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활용계약 공고) 시장은 활용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후(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를 말한다)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1. 구역 및 목적
2.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구역의 관리기간

제17조(계약의 변경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체결된 활용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시장은 활용계약만료 1월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활용계약만료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8조(계약위반시의 조치) 활용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반한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활용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활용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활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활용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유지관리 등) ① 시장은 활용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관리한다.

② 시장은 활용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제18조제2호에 따라 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장 녹화계약

제20조(대상구역) ①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따라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의 토지
2. 도시녹화계획에 따른 중점녹화지구
3. 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장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를 포함한다),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따라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 주변지 및 경관·미관지구
6. 그 밖에 시장이 녹화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 대상구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법에 따라 설치된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관리되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녹화계약 대상구역에서 제외한다.

제21조(계약내용) 시장은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1. 식재는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녹화의 종류

- 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구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해야 하며, 녹화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 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
- 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종류를 정하도록 한다.
- 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
- 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너(화분, 플라워 포트 등을 말한다) 녹화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

나. 녹화의 장소

- 1) 녹화계약구역 내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그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경관에 영향을 주는 장소로 한다.
- 2) 녹화계약구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
- 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을 포함한다)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담을 낮추

고 블록의 안팎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안팎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수목의 가지치기, 전지, 물주기, 병·해충의 방제, 비료주기, 풀 뽑기 및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정하도록 한다.

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구역 내의 식재식물이 토지 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 또는 제거하거나 녹화면적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 녹화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설치

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배포

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및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설계지원 등

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 및 지원

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

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상담

사.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

아. 그 밖에 시장이 도시녹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프로그램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8.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 녹화계약구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10.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11. 그 밖에 시장이 녹화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그 체결·이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규약을 정하여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23조(계약체결 요청)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녹화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그 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녹화계약서를 시보 또는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 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5조(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4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26조(계약체결의 공고) 시장은 녹화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시보 또는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7조(계약의 변경 등) ① 제25조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가 정한 규약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 후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③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기간만료 1월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8조(계약위반시의 조치) ①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녹화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9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5장 도시녹화사업 지원 등

제30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건축물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가 옥상녹화, 창문 화단녹화, 벽면녹화, 담장 개방녹화 또는 실내조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제21조와 「건축법」 제32조 등 건축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1조(시민참여 지원) ① 시장은 출생·입학·졸업·창사·결혼·회갑 또는 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또는 법인·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공원·녹지 또는 도로 등에 초화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2조(나무은행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또는 공동주택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수목과, 시민이 기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나무은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개발사업을 승인할 때에는 그 계획구역 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대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3조(녹지관리실명제의 운영) ① 시장은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법인·단체(이하 “법인·단체 등”이라 한다)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실명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촉장을 수여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녹지관리실명제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환경개선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인증 수여
2. 녹지의 실명관리 우수 법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
3.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봉사활동 인정
4. 관리대상 녹지에 관리자 실명을 표기한 표지판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녹지관리실명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6장 공원녹지 및 공원시설

제1절 설치 및 관리

제34조(공원의 세분) 공원은 법 제15조제1항의 세분에 따르되,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제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

1. 생태공원 :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으로 생물 다양성의 증진과 더불어 시

민의 휴식·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놀이공원 : 각종 놀이 및 위락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제35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13조 제4호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공원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허가받은 민자유치 공원 내 유흥시설의 설치 및 폐지
2. 이미 허가받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 1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은 1회에 한한다.
3. 어린이공원·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다만, 이 경우에는 시보 및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36조(설치 등) ①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해야 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의 경우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 면적을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울타리가 쳐진 공원, 유료 이용시설 등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관리방법) ① 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하거나 시장으로부터 공원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민간자본으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법인·단체 등은 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공원시설 중 일

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편익시설 또는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입찰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원시설 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미리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8조(위탁관리 기간)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가 그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되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위탁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계약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원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공원이용의 활성화) ① 시장은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절별, 공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이용프로그램(이하 "공원이용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의 참가비를 별표4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원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법인·단

체 등에게 대항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프로그램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금지행위) 누구든지 공원녹지 구역 안에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입장거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공원 및 공원시설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원 및 공원시설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거부 또는 퇴장시킬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2절 공원녹지 점용허가

제42조(점용허가대상 공원) 시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원
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43조(공원 점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원 안에서 점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잘게 부순 돌 및 잔디블럭 등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고, 점용기간 만료 후 그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2. 영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은 공원 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에 한한다.
3.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에 한한다.
 - 나. 「지적법」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 다.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본다.
4.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때에 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5. 영 제22조제14호에 따른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는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해당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에 한한다.
 - 나. 증축은 가목의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르되 증축의 규모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이내로 한다.
 -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같은 대지 안에서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분할 또는 합병에 있어서는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판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영 제22조제15호에 따른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은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1.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그 밖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가 지상으로 돌출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 수목식재 등으로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해야 한다.

2.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어야 한다.

3. 가설 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해야 한다.

제44조(점용허가대상 녹지)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 경과한 녹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녹지

제45조(녹지 점용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 점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영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입도로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폭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해야 한다.
 -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진입도로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마목의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해야 한다.

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진입도로를 허가할 수 없다.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를 해야 한다.

3. 영 제4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의 경우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을 말한다)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한다.

제46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해야 하며, 점용허가의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② 영 제23조 별표1 제10호의 경기·집회 또는 전시회·박람회·공연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집회의 경우 2월 이내

2. 전시회·박람회·공연 등의 경우 1년 이내

③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 만료 후 해당 점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점용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점용기간의 연장이 해당 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 기간, 면적과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3절 요금

제48조(입장료 및 이용료) ① 영 제46조에 적합한 공원으로서는 별표4의 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해당 입장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외국환 및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율은 시금고 은행의 전일 최종 현금 매입가를 적용하여 받고, 거스름돈이 있을 경우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입장료 및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각각 별표4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원시설을 3월 이내로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료의 1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시장은 원상복구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요경비 외의 이행보증금 나머지 금액을 예치한 사람에게 반환한다.

제49조(사용료)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용역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징수하며, 일반입찰 또는 제한입찰의 방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용역 등의 방법에 따른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낙찰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유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되어 개방하고 있는 공원을 그 연고자에게 위탁관리 하는 경우
2. 수입이 없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관리 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기념관과 그 관련시설을 기부 채납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관리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50조(점용료)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5의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51조(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① 입장료·점용료는 시장이 산정하여 발부하는 납부고지서 또는 입장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 중 녹화·촬영을 위한 이용료 및 운동장 이용료의 경우 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위탁기간의 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연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연수
2.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월수/12
3.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일수/365

③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
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④ 사용료 및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 이내 기간으로 관리위탁 또는 점용허가(이하 이 항에서 "허가"라 한다) 하는 때에는 그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관리위탁 또는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2. 1년을 초과하여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일로부터 1년분은 관리위탁 또는 점용 개시일 전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 당초 관리위탁 또는 점용 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52조(요금의 환불 등) ① 인터넷 예약 등으로 사전 납부된 입장료·이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9.>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보다 과소하거나 요금산정의 착오 등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승인·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사용승인·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6. 6. 29.>

제53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찰단과 그 수행자
2. 6세 미만의 사람 및 65세 이상의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1급에서 3급까지 중증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공원 내에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6.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참전유공자
7.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4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공원 및 문화시설을 이용한 후 1월 이내에 공원을 다시 이용하는 사람
2. 다자녀우대카드(시 거주 3자녀 이상 가정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3. 30명 이상의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구히 보전할 수 있는 사적(史的)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시가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3. 시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4조(준용) ① 시장은 요금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징수 및 감면기준 등에 따라 해당 요금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이 조례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유원지, 그 밖의 공원과 비슷한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 조례를 준용할 때에는 그 시설물의 명칭, 구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표시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5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시장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6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녹지활용계약서 (제14조제5항 관련)

토지소유자 ○○○을 “갑”이라 정하고, 목포시장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지활용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제2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첨부된 도면과 같다.

토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m ²)
목포시 ○○읍·면·동 ○○리			

제3조(계약토지의 무상대여 및 사용목적) “갑”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해당 토지”라 한다)를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을”은 해당 토지를 시민(주민)이 휴식 등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제4조(계약기간)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간으로 한다.

제5조(시설의 설치·정비) 해당 토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필요시 화장실)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정비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6조(관리) 계약기간 중 녹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해당 토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

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토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토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7조(토지사용의 제한) “을”은 제5조에 따른 해당 토지 내의 시설의 설치·정비 및 제6조에 따른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갑”의 승인 없이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8조(금지행위)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승낙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재산세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해당 토지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2. 재산세 비과세와 관련된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0조(해당 토지의 유지관리) “을”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유지 관리한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12조(계약의 갱신) ① “을”은 “갑”과 계약기간만료 1월 전까지 계약갱신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갑”은 계약기간만료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② 계약만료일까지 “갑”이 “을”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 갱신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만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

로 해당 토지에 대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3조(계약위반시의 조치) “갑”, “을”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해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반한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해당 토지의 반환) “갑”은 계약기간 중에는 “을”에게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을”은 이 계약이 만료하여 “갑”이 더 이상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속히 해당 토지를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5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이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을) 목 포 시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녹화계약서 (제23조 관련)

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 대표자를 “갑”이라 정하고, 목포시장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화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이 계약 대상지역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갑”은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이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계약의 명칭) 이 계약은 ○○마을(지구) 녹화계약이라고 한다.

제4조(대상지역) 이 계약의 대상지역은 목포시 ○○읍·면·동 ○○리 ○○번지 외 ○○필지 ○○m²로 별지 세부 토지조서 및 도면에 표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녹화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간으로 한다.

제6조(녹화에 관한 사항) 제1조에 따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화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의 녹화에 노력해야 한다.

1. 안정되고 질서있는 환경이 되도록 도로에 면한 부분은 수목을 열식 또는 생울타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철망펜스를 병용한다. 다만, 가옥의 출입구·차고 등 필요한 부분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녹지가 풍부한 주택지가 되도록 향토수종 등을 식재하고 수목이 잘 성장하도록 가꾼다.
3. 계절감이 넘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도로 인접지는 꽃이 피는 수목을 식재하되, 식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부분에 화분으로 초화류나 관목류 등을 놓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4. 블록담을 설치할 경우에는 블록의 안쪽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바깥부분

(도로와 접한 부분)에 화단을 설치하여 초화류 등을 식재한다.

제7조(녹화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은 동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는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등은 식재한 수목이 각 가정의 녹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보전 및 미관풍치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함부로 훼손·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그 밖에 공작물을 설치할 때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식재된 수목을 이식하고, 훼손이 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3. 제2호에 따라 보식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4.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구역의 미관풍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수 등에 대하여도 갈수기에는 가정에서 사용한 잉여수를 이용하여 관수하는 등 관리에 노력한다.

제8조(묘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_____ .
2. _____ .
3. _____ . (이하 생략)

제9조(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의 운영) 이 계약내용을 원활하게 이행·관리하기 위하여 “갑”은 년 2회 이상의 주민협의회를 개최한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이 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는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른다.

제11조(계약의 갱신) ① “갑”은 계약기간만료 1월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해당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2조(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 해당 계약구역 안에서 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계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소유권 등을 양도 등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 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13조(계약위반시의 조치) ① 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을 위반한 사람으로 하여금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약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을”은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서의 보관 등) 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갑”은 계약대상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제공해야 한다.

년 월 일

(갑) ○○ 주민협의회 대표자 주소 :

성명 : (인)

(을) 목 포 시 장 (인)

[별표1]

공공공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8조제1항 관련)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 기준

가. 녹화목표

- (1) 녹화의 목표는 양적인 목표와 질적인 목표를 구분 설정한다. 특히, 질적 목표는 공공시설의 녹화가 도시녹화, 지역녹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 (2) 현황과 비교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하도록 한다.
- (3) 녹화계획을 구체적이며 알기 쉽도록 도면이나 스케치를 작성한다.

나. 조성 기준

- (1) 녹화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기법으로서 각 공공공익시설별로 내용, 사업별, 목표량, 사업주체 및 사업시기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2) 특히,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가로수 등의 공공공익시설 녹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옥상녹화가 가능한 부분은 녹화해야 한다.

2. 공공공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

가. 관공서 녹화

- (1) 대상 시설로는 시청사,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시민회관, 도서관 및 박물관 등으로 한다.
- (2) 시청, 회관 등 큰 규모의 관공서는 가능한 경우 울타리를 없애고 교목과 관목(생울타리, 화단 등)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 (3)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동사무소)와 같은 작은 규모의 관공서는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작은 분수와 녹음수, 파라솔 등과 같은 시설을 도입한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지방자치단체 관공서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해소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 (4) 관공서 중 노후 담장을 우선적으로 녹화하고, 가시권이 불량한 지역이나 녹지가 부족한 지역 내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 (5) 지역 내 관공서 중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시행하도록 한다.
- (6)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도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녹화실천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책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관공서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나. 교육 및 의료시설 녹화

- (1) 학교, 병원 및 보건소 등은 각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일괄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한다.
- (2)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녹지수준이 비교적 낮은 학교, 병원 등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추진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교육 및 의료시설의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 (3) 학교 및 병원시설에 담장녹화, 생울타리 또는 시설녹지 개념의 녹지대 조성, 담장 철거 및 투시형 펜스 설치 등으로 공공시설의 개방감을 연출하고 인접한 보행로와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가시 가능한 도시녹화공간을 확보한다.
- (4) 학교와 병원시설 주변에 가급적 담장설치를 억제하여 공공성과 개방성을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외곽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녹지대 및 투시형 펜스로 시설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다만, 수목으로 조성할 경우, 교목을 열식하고 하목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하며, 생태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수종을 도입하여 특색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다. 역사주변 녹화

- (1) 역사는 출입구 위치와 인접 교차로 현황 등에 따라 다양한 녹화가 가능하므로 주변 환경의 체계적인 현황분석을 통하여 유형별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 (2) 역사 녹화사업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용률이 높은 환승역사 주변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역사주변에 식재 가능한 소규모 공지는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녹지 휴식공간을 확보한다.
- (3) 역사 진·출입 부근은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역사주변 건축물의 이용 동선과 마찰이 없도록 주변 건축물의 용도 및 기능과 연계시켜 녹지로 조성하고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라. 철도변 녹화

- (1) 철도변을 녹화하여 운행 시에 보여지는 주변의 불량한 경관을 차폐하여 여행객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한다.
- (2) 철도변의 녹화사업은 열차운행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방음·방진·차폐식재 등을 위주로 시행하며, 철도변의 부지는 대부분 협소하므로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 (3) 철도변의 녹화는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주로 실시하고, 차폐식재는 열차 승차 시에 보여지는 시선방향으로 상록교목을 식재하며, 방음식재는 수목의 폭원이 확보되어야 소음감소 효과가 있으므로 가급적 철도변 가까운 곳에 상록교목을 모아심기 하도록 한다.

마. 주차장 녹화

- (1) 주차장 녹화사업을 통해 녹지면적을 증가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 (2) 주변의 이질적 경관 및 소음과 같은 환경악화 요소를 시각적으로 차단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 (3) 공용주차장의 경우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넓은 열린 공간을 갖고 있으므로, 가로와 접한 일정 부분을 건축선 후퇴를 유도하여 확보되는 가용지를 가로수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 (4) 장기적으로 일반 주차빌딩과 연계된 환승주차장을 확보하여 기존 지상 주차장의 가용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 (5) 주차장 내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대신 잔디와 화강석 또는 벽돌을 혼용하는 투수형 잔디블럭과 같은 특수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 (1) 도시구조물의 유형별 녹화공법 등 종합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 벽면의 차폐 및 장식, 오염 또는 비바람에 의한 외벽 침식 및 풍화방지, 벽면 온도의 상승억제에 따른 열부하 감소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한다.
- (2) 육교와 방음벽 같은 도시의 주요 구조물은 가로 구조물 벽면에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 (3) 가로변의 절개지와 옹벽, 석축 및 교량의 교각 등 도시구조물의 벽면에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킨다.
- (4) 특히, 지표와 가까운 구조물은 녹화가 용이하므로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사. 가로변 녹지대 조성

- (1) 가로변의 유휴공지나 도시구조물 등을 녹화하여 녹음을 보강하고 바닥포장과 가로시설물이 일체화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가로환경을 조성한다.
- (2) 도로여건상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열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수 아래 관목류를 식재한 복층화를 통해 가로공간의 녹시율을 높인다.

- (3) 중앙분리대 등 기존 녹지대를 복층으로 식재하며 가로변 녹지대 및 가로수 아래 보도면 일정구간에 화단을 조성하여 화목류(철쭉류 등) 및 향토수종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한다.
- (4) 차량위주로 되어 있는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푸름과 그늘이 있어 주민이 걷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를 조성한다.
- (5) 교차로변의 공지에는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목이나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물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푸름과 윤택함이 있는 가로환경으로 조성한다.
- (6) 교차로부근은 일반적으로 보행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시민들이 휴식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필요하므로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한다.

아. 비포장확대 및 투수성 포장

- (1)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공원, 휴게 공간 등은 투수성 포장공법 등을 적용하여 우수 침투율이 극대화되도록 한다.
- (2) 우수의 자연지반 침투가 불가능한 인공지반 상부에는 우수저류공법을 적용하여 우수가 단지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3) 우수유출량이 많은 도로주변에는 우수침투 및 저장 공간을 조성한다.

[별표2]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8조제2항 관련)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 기준

가. 녹화의 목표 : 사유지 녹화는 주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유형별로 목표를 알기 쉽게 설정하도록 한다.

나. 조성 기준 : 유형별로 녹화사업기법을 기술하면서 특히 사업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지도내용 및 조성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활용, 공개공지나 유희공지의 녹화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다. 시민의 참가, 협력 등

(1) 주민, 기업 등 민간의 도시녹화에 대한 참가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기술한다.

(2) 지역의 도시녹화기금이나 공원협회, 녹지관리기구 등의 도시녹화 관계단체의 육성, 협력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주민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기술한다.

라. 보급 활동과 표창 등의 시행

(1) 녹화특성과 주민의 활동 상황을 근거로 하여 기념식수, 홍보활동의 강화, 녹화경연대회 개최, 교육활동의 강화, 녹지의 날 및 월간 녹지의 달 제정, 녹화행사의 개최,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나무와 꽃의 제정, 주민참가에 의한 녹화운동의 추진 및 녹지의 애착을 높이기 위한 운동의 추진 등 주민의 녹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급 활동의 방법을 제안한다.

(2) 표창 등 제도의 추진도 다양하게 시도한다.

2. 사유지 유형별 녹화기준

가. 공업지 녹화 : 도시경관 개선의 측면에서 이전이 어려운 공장지를 녹화하고 아울러 공장 주변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고 오염발생시설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나. 상업·업무지 녹화

- (1)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및 대형건물은 도시의 중심부에 주로 위치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한다.
- (2) 건축물 옥상녹화 : 녹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부의 건축물 옥상을 녹화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함은 물론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시녹지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
- (3) 대형건물 진입부 주변 녹화 : 공공기관과 관공서의 전면부는 기관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곳이고, 상업 및 업무지역의 출입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이와 같은 대형건물의 진입부 및 주변 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도시의 녹화 측면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 (4) 신축건물의 공개공지 확보 및 녹화 : 신축건물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을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률 등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를 통하여 도심의 오픈스페이스를 다각도로 확보하고 이를 녹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의 개선 및 쾌적성 향상을 도모한다.

다. 주택지 녹화

- (1) 도시인구의 증가로 고밀화된 도심지 주거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주거지 녹화사업을 시행한다.
- (2) 사업추진은 주민 스스로가 조성·관리하며, 시장은 수목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녹화가 되도록 한다.
- (3) 주거지 녹화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높이고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4) 골목 가꾸기 : 녹지 확보가 어려운 좁은 골목이나 주택단지의 출입구 및 창문에 화분 등을 내어 놓음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킨다. 시장은 가꾸어진 사례를 포상하는 제도 등

을 통해 사업을 장려한다.

- (5) 담장 및 벽면녹화 : 주거지역 내의 담장 및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여름철 복사열을 완화시키고, 블록 담장을 투시형으로 교체 가능한 지역은 수목을 식재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인다.

[별표 3]

녹지활용계약 대상토지 선정시 고려할 사항 (제11조제4항 관련)

구 분	토 지 여 건	고려할 사항
우 선 대상지	1. 주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 초지 및 수변지 등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토지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지 2. 지목이 임야잡종지인 토지로서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 및 풍치지구 등의 수림지를 우선으로 하며, 계약 당시 임상이 양호한 수림지가 아니라도 계약 후 식재 등에 의하여 장기간 녹지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 3. 주택지와 수림지가 연결된 임연부의 토지로 원래는 수림지였으나 인근 주민의 무단경작으로 인하여 숲이 훼손된 곳 등 4. 도시공원, 자연환경보전지구 등과 인접한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 5.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 녹지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 이미 개방되어 보전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토지 ·근린공원의 공급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 인접한 토지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 일상 접근이 용이한 토지 ·임상이 양호하나 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전을 필요로 하는 토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환경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토지
차 선 대상지	1.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인 토지. 다만, 공원조성 및 토지매입 등의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2. 수림지, 초지 및 수변지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단, 해당토지가 보전산지(공익용산지), 보안림, 산지정화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 및 연안구역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함> 3. 종교시설지 또는 성지가 수림지, 토지 및 수변지이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훼손의 우려가 있는 토지 등	

[별표 4]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 (제48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종 별		사 용 기 준	금 액(원)	
			체육경기	기타행사
잔 디 광 장		1㎡당, 3시간	20~40	
일반운동장(광장)			5~10	10~20
축 구 장	잔 디	3시간 기준 (정규 1게임)	150,000~200,000	250,000~300,000
	인조잔디		60,000~80,000	100,000~120,000
풋살경기장	주 간		30,000~50,000	
	야 간		50,000~70,000	
테니스장	주 간	1면당, 3시간당	12,000~18,000	
	야 간	1면당, 3시간당	16,000~24,000	
사 진 촬 영		1인 1년당	130,000~169,000	
촬영 및 녹화		1시간당	13,000~19,500	
		초과시간당	6,500~13,000	
공원이용 프로그램참가비		1회당	1,000~20,000	
강의실 대여료		1시간당	20,000~30,000	

◦ 공원의 시설이용료는 공원관리청이 정하며 위탁관리자가 공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자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 전에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원관리청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주) ◦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 풋살경기장의 청소년 이용요금은 30% 할인(단, 어린이는 무료)

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이상일 때 적용한다.

※ 세부내용은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2를 준용한다.

[별표 5]

공원 및 녹지 점용료 (제50조 관련)

점 용 대 상	점 용 료
1. 전주, 전선, 변전소	재산가액의 100분의 5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	"
3.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	"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취수시설, 관개용수로, 생활용수공급의 배수시설	"
5. 경찰서, 파출소, 초소, 등대	"
6. 방화용 저수지, 지하 대피시설	"
7. 통신시설, 축성시설, 기타 국방부 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
8.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 공작물	"
9. 경기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 가설 공작물	"
10. 제1호 내지 9호에 규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
11.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
1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산지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10
13. 제1호부터 제5호와 제7호부터 제9호에 규정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	재산가액의 100분의 5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제55조 관련)

관 련 법 령	해 당 조 항	과 태 료
법 제49조 제1항	1.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행위	100,000원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50,000원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0,000원
법 제49조 제2항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0,000원
	2.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50,000원
시행령 제50조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100,000원
	2.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0,000원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0,000원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행위	50,000원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0,000원
	6.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00,000원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0,000원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00,000원

목포시 고시 제2019-18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8일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1	목포시 수문로83번길 17-1	2019.1.28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6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목포시 공고 제2019-103호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잦은 축제 명칭 변경으로 인한 축제추진위원회 본연의 기능 수행 능력 저하를 방지하고 봄 축제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를 반영하며,
- 우리시 봄철 대표 축제를 우리시 이미지에 가장 부합하는 ‘목포 유달산 봄 축제’로 지정하여 봄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및 우리시 홍보와 더불어 관광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가 관할하는 축제명 변경(제2조)
- 당연직 축제추진위원 변경(제3조)
→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부서명 변경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5.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성별영향 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2109A전남목포003)

6.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기간 : 2019. 1. 28. ~ 2. 18.(21 일간)**8.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18일까지 목포시장(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관광과

다. 제출 방법 : 우편, 팩스(061-270-8569), 직접방문 등

9.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관광과(☎061-270-8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목포 이순신 수군문화축제”를 “목포 유달산 봄 축제 등 계절축제”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관광경제국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해양항만과장”을 “관광경제국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해양항만과장, 수산진흥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기능) ①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축제는 다음과 같다. 1. <u>목포 이순신 수군문화축제</u> 2. (생 략) ②·③ (생 략)	제2조 (기능) ①----- -----. 1. <u>목포 유달산 봄 축제 등 계절 축제</u>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 (구성)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경제국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u>해양항만과장</u>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 5. (생 략) ③ (생 략)	제3조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해양항만과장, 수산진흥과장</u> ----- ----- -----.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시 정 알 림 판

「만호동 129마트」 생활용품 무료 대여 서비스 실시

『만호동 129마트』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 중인 물품을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통해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며, 작은 행복이 늘 함께하는 “나눔 공간”입니다.

- 장 소 : 만호동 행정복지센터 1층(만호동 129마트)
- 이용대상 : 만호동 주민 누구나 이용
- 이용방법 : 만호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여 사전 예약 후 물품대여 가능 여부 확인



○ 유의사항

- 사용물품 훼손 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생활용품을 기부 받고 있으며, 주민이 필요한 물품은 현금기부 사항을 검토하여 만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만호동행정복지센터 ☎ 061-270-4702, 4707, 4710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강화 안내

- 추진배경 :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강화하는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2019. 1. 1.)
- 규제내용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현행 기준	변경 사항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제외 대상 : 종이재질 봉투,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	무상제공 금지	유상·무상 모두금지 (사용금지)
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 (165㎡~3,000㎡)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업		-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함

※ 계도기간(2019. 3. 31.까지) 이후 과태료 부과 - 최고 300만원

-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 경우
 - 종이재질의 봉투 또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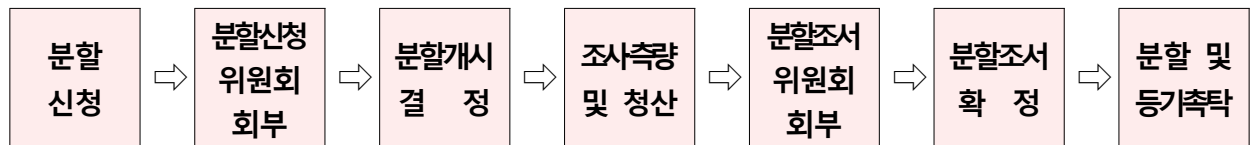


자원순환과 ☎ 061-270-3656

시 정 알 림 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됩니다!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 「건축법」 등 관련법규의 제한 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
- 시행기간 : 2012. 5. 23. ~ 2020. 5. 22. (8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 분할대상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 ※ 제외대상 : 집합건물 내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토지와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
-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
- 신청서류 : 분할신청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지분표시 명세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 등), 이해관계인 명세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 신청방법 :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방문 접수
- 분할절차



민원봉사실 ☎ 061-270-3476, 3261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스마트교실」 운영

- 운영기간 : 2019. 1. 21.(월)~8월 검정고시 시험일까지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모집(20명 내외)
- 운영대상 :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비 용 : 무 료
- 교육과정



과 정	내 용	요일 /시간
중학교 졸업	· 기초학습 수준 진단 및 학습전략 습득 · 학습 멘토 연결 통한 1:1멘토링 · 검정고시 자료 및 동영상 지원 · 센터 내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 우선 제공	매주 월, 화 (13:00~16:00)
고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과정과 동일 · 과목별 전문 강사지원(수학, 영어, 한국사) · 오후 학습 시 중식 제공	매주 수, 목, 금 (10:00~16:00)

- 신청방법 : 목포시청소년복지센터(youth.mokpo.go.kr)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신흥로 83번길 14, 목련아파트 복지동) 방문 접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061-284-0924